

정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 공급요령 고시

-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부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00두 이하 등 농가부업 축산규모에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10월 1일 세부절차를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 공급요령"을 고시,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업 축산규모의 농가는 이날부터 배합사료를 구입할때 부가세 10%를 면제받게 된다. "공급요령"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농가부업규모 축산농가의 신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자"라 함은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업소"라 함은 배합사료제조업체, 조합(농협·축협) 및 일반인이 운영하는 배합사료 판매소를 말한다.
3. "구입(공급)카드"라 함은 이 요령에 의하여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 구입(공급)카드를 말한다.
4. "한도량"이라 함은 수요자가 소정의 기간중 판매업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의 총량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라 함은 축협(지역 축협과 해당 업종 조합 및 지소)과 농협(단위조합 및 지소)의 구입(공급)카드의 발급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로 한다.

제4조(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① 제3조에 의한 신청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가축 자가사육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② 배합사료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가축 자가사육사실확인원은 신규, 이전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6개월 단위로 발급 요청한다.

제5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 구입(공급)카드의 발급) ① 관리기관은 수요자가 가축 자가사육사실확인원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합사료 구입(공급)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2매(농가보관용 1매, 판매업소보관용 1매)를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가 판매업소를 달리하여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소별(농가보관용 1매, 판매업소보관용 1매)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카드관리대장과 카드에 수요자가 계산한 축종별 배합사료 공급 한도량을 검산한 후 당해 조합장 명의로 발급한다. 다만, 수요자가 한도량의

계산을 관리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카드관리대장(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사육가축의 증감등에 따라 한도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의거 카드에 변경된 한도량과 변경일자를 기록하고 관리기관의 확인자가 검인한다.

⑤ 수요자가 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카드를 발급한 관리기관에 분실(훼손) 신고서(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관리기관은 동 신고서에 의거 카드를 재발급하되 관리대장 및 카드에 재발급 사실을 기록한 후 당해 조합장이 검인토록 한다.

제 3 장 공 급

제6조(한도량의 산정기준)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 구입(공급)한도량은 6개월 단위로 제2항의 가축별 1일 공급량 기준에 의거 산출하여 카드에 기재한다.

② 가축별 1일 공급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한육우, 교잡우, 젃소·숫소)는 10kg, 송아지(생후 6개월령까지)는 5kg으로 한다. 다만, 임신우·종모우는 7kg으로 한다.
2. 젃소(암소)는 12kg으로 하고 송아지(생후 6개월령까지)는 5kg으로 한다. 다만, 고능력젃소(1일 산유량 40kg 이상)는 15kg, 임신우·종모우는 각각 7kg으로 한다.
3. 돼지는 2.5kg으로 한다. 다만, 포유돈은 6kg을 적용하며, 이유전 새끼돼지는 0.7kg으로 한다.
4. 닭은 0.13kg으로 한다. 다만, 병아리(생후 3주령까지)는 0.07kg으로 하고, 종계는 0.15kg으로 한다.
5. 오리는 0.23kg으로 한다.
6. 면양과 산양은 0.5kg으로 한다.
7. 토끼는 0.4kg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한도량을 산정한 결과 1포 또는 1kg에 미달 될 때에는 1포 또는 1kg으로 간주한다.

제7조(카드의 사용) ① 수요자는 조합으로부터 교부받

은 카드 2매중 1매(판매업소 보관용)를 구입기간내에 판매업소에 제출하고, 1매(농가보관용)는 사료 구입시마다 확인후 수요자가 보관한다.

② 카드에 의한 배합사료 판매 및 구입의 최저단위는 kg 또는 포(25kg)이고 제6조에 의한 한도량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입할 수 없다.

③ 카드의 기재는 판매업소 보관용 카드와 농가보관용 카드에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하고 수요자와 판매업소가 확인후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사 후 관 리

제8조(카드발급시 유의사항) 관리기관은 카드발급시 또는 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관리기관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 구매를 권유하는등 축산농가의 자유로운 구매 행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카드등의 관리) 관리기관과 판매업소는 이 요령에 의한 카드와 서식을 5년간 성실히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자가사육 사실 확인원의 유효기간) 이 요령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자가 사육사실 확인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3조(6개월의 기산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95. 10. 1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기산한다.

제4조(전산처리등) 축산농가와 판매업소간에 컴퓨터에 의한 전산처리등으로 이 요령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카드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별표1)

- 젃소 : 20마리 • 소 : 30마리 • 돼지 : 200마리
- 산양 : 300마리 • 면양 : 300마리 • 토끼 : 5,000마리
- 닭 : 10,000마리 • 오리 : 10,00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